

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엄셋별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233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2. 9. 6.
발 의 자 : 엄셋별 의원
찬 성 자 : 도병두, 고성미,
이인식 의원

1. 제안이유

상임이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임이사인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하여 재단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임원 직제를 명확히 함(안 제7조제1항).
- 나.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선임직 이사의 임명방식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5항).
- 다. 대표이사의 직무를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.
- 라. 직원의 임면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
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5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- 3) 입법예고 : 2022. 9. 7. ~ 9. 14.
- 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상임이사”를 “대표이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사회”를 “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상임이사”를 “대표이사”로, “통해”를 “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세무사로 한다”를 “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상임이사”를 “대표이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”를 “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”로 한다.

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1조 중 “이사장이”를 “대표이사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임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임이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표이사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 및 <u>상임이사</u>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</p> <p>② 이사장은 <u>이사회</u>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⑤ 선임직 이사 중 <u>상임이사</u>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,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<u>통해</u>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<u>세무사</u>로 한다.</p> <p>⑦ <u>상임이사</u>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</p> <p>⑧ (생략)</p> <p>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<u>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·감독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임원) ① ----- <u>대표이사</u> 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<u>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</u>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대표이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</u>의 추천을 받아 -----.</p> <p>⑥ ----- <u>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u></p> <p>⑦ <u>대표이사</u>----- -----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<u>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
여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직원의 임면) 재단의 직원
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직원의 임면) -----

대표이사가 -----.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 1. 4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95호, 2017. 1. 4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대하여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·개발
2.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교류 활성화
3. 금나래아트홀(갤러리를 포함한다) 운영 및 관리
4.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
5.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 및 지정하는 사업
6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과 명칭
2. 사무소의 소재지
3. 자본금 또는 출연금
4.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5.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8. 해산에 관한 사항
9. 공고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
2. 도서관업무 소관국장

⑤ 선임직 이사 중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,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.

⑦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⑧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·감독 할 수 있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선임직 이사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이사회)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직원의 임면)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12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의 대행)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.

제15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6조(사업계획 등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7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(검사·보고 등)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·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제20조(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) 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1조(공무원의 파견)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제895호, 2017.01.04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80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8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9조(임원)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한다.

제15조(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) 출자·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,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.